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28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 3. 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28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3호, 2026. 2. 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도축장, 집유장도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및 우대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부터 제조 및 유통까지 식품 전 주기 HACCP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으로 수기 오류 등 휴먼에러 방지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축장, 집유장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제16조)

1)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으로 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 집유장도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평가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심벌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 메일: aeiou2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00호

「식품위생법」 제48조부터 제48조의 5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부터 제9조의6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3호, 2026. 2.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자는”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으로 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도축업 및 집유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2항 전단,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자동”을 “자동”으로 하며, “한다.”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취소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하고, 제4항부터 제7항을 제5항부터 제8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관할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때 제11조

의2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하여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별표 4의2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별표 8 중 나목에 “그림1”을 “그림1.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도축장, 집유장 제외)”로 하고, 그림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Smart HACCP) 심벌

그림2. 도축장, 집유장





별지 제9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연장)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 취소신청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26- 호, 2026.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등)	제11조의2(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등)
①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도축업 및 집유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2항 전단,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별표 4의2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생 략)	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별표 4의2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	③ ---------- ---------- ----------

현 행	개 정 안
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 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안전관리인증 종료일 또는 등록 취소일까	⑤ 자동 ----------

현 행	개 정 안
지로 한다.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취소일까지로 한다.
⑤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 별지 제11호서식---------- ---------- ----------.
⑥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소재지 또는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중요관리점(CCP)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현행 ⑥과 같음)
⑦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⑧ ---------- -- 제7항에 ---------- ----------

현 행	개 정 안
인정될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신 설>	⑨ 관할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평가 방법)	제16조(조사·평가 방법)
①~③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때 제11조의2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하여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별표 4의2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확인할 수 있다.
[별표 8]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품목 심벌(제27관련)	[별표 8]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품목 심벌(제27관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Smart HACCP) 심벌	나. ----------
그림1	그림1. 스마트 해썹 적용 업소(도축장, 집유장 제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그림2. 도축장, 집유장
<신 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별지 제9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 [ ] 등록 [ ] 연장 신청서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등록 40일/ 연장 60일

신청인	영업신고(허가,등록) 번호		영업신고(허가,등록) 연월일
	영업소명		전화번호 E-mail :
	소재지	본사	
		공장(사업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휴대전화
	HACCP팀장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신청 내용	HACCP 인증 여부 ☐ HACCP인증 업소 ☐ HACCP 인증 신청 업소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 ※ HACCP 인증 신청 업소 : 최초 HACCP 인증 신청과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을 신청한 경우			
	HACCP적용 규모 ☐ 일반 ☐ 소규모 ※ 소규모 HACCP : 해당품목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식품명(유형) 및 중요관리점			
	업종·식품명(유형)	중요관리점	업종·식품명(유형)	중요관리점
	업종·식품명(유형)	중요관리점	업종·식품명(유형)	중요관리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연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나.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HACCP 적용업소의 경우에 한함)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 사본 다.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원본(등록 연장의 경우에 한함) 라. HACCP 관리계획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HACCP 관리계획서)	→	현지 확인 및 평가	→	판정	→	결재	→	HACCP 인증서, HACCP 확인서 발급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영업신고(허가,등록) 번호		영업신고(허가,등록) 연월일	
	영업소명		전화번호 E-mail :	
	소재지	본사		
		공장(사업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휴대전화
	HACCP팀장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			
업종·식품명(유형)			
중요관리점(등록관리번호)			[ ]추가 [ ]삭제
			[ ]추가 [ ]삭제
			[ ]추가 [ ]삭제
			[ ]추가 [ ]삭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사항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나.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HACCP 적용업소의 경우에 한함)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 사본 다.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원본(등록 연장의 경우에 한함) 라. HACCP 관리계획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HACCP 관리계획서)	→	현지 확인 및 평가	→	판정	→	결재	→	HACCP 인증서 HACCP 확인서 발급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 취소신청서	처리기간
	7일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처리부서	확인(인)

신청인	영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적용업종 또는 식품명(유형)		인증번호	
	중요관리점		등록관리번호	

위와 같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시・도지사 귀하

※ 첨 부 :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